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9월 30일

총현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형	김 *형 1947-12-3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6길 (북아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9-22
김 *운	김 *운 1977-03-24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가길 (북아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9-22